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소재 · 부품 · 장비 협회의 설립〉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51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                          | 1  |
| III . 주요내용 .....                         | 2  |
| IV . 검토의견 .....                          | 3  |
| 1. 소재 · 부품 · 장비 협회의 설립 .....             | 3  |
| 2.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당연직 위원 위촉 ..... | 14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고동진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5. 8. 7.
3. 회 부 일 : 2025. 8. 8.

## II. 제안이유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 및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국가 경제와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은 반도체 공급망의 근간을 이루며, 고도화된 기술과 안정적인 공급이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분야임.

하지만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될 여지가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개별 소부장 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관련 자원과 역량에 한계가 있는 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부장 협회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 등의 소부장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협회를 설립하여, 국내 반도체 등 소부장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 국내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적 차원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임.

### Ⅲ. 주요내용

가. 반도체 등의 ‘소재·부품·장비 협회의 장’을 대통령 소속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함(안 제8조제3항).

나. 반도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재·부품·장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제1항 신설).

다. 협회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재정·위탁 사업 수행 및 지원,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양성, 조사·분석, 정책 지원·제안,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 조사·연구, 공급망 안정화 및 동반성장협력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라. 정부는 협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8조의2제4항 신설).

## IV. 검토의견

### 1. 소재·부품·장비 협회의 설립 (안 제18조의2)

개정안 제18조의2는 반도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소재·부품·장비의 개발 및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서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18조의2(소재·부품·장비 협회) ① 반도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재·부품·장비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1.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정부 재정·위탁 사업의</p> |

| 현행 | 개정안                                                                                                                                                                                                                                                                                                                                                                                                                                                                                           |
|----|-----------------------------------------------------------------------------------------------------------------------------------------------------------------------------------------------------------------------------------------------------------------------------------------------------------------------------------------------------------------------------------------------------------------------------------------------------------------------------------------------|
|    | <p><u>수행 및 지원</u></p> <p>2. <u>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u></p> <p>3. <u>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u></p> <p>4. <u>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분석</u></p> <p>5. <u>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제안</u></p> <p>6. <u>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 조사·연구</u></p> <p>7. <u>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동반성장협력 등을 위한 업무</u></p> <p>8.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u></p> <p>④ <u>정부는 협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u></p> <p>⑤ <u>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u></p> |

| 현행 | 개정안                                                                                                                               |
|----|-----------------------------------------------------------------------------------------------------------------------------------|
|    | <p><u>을 준용한다.</u></p> <p><u>⑥ 협회의 설립·조직·운영·</u><br/> <u>업무·재정 및 행정 지원 등</u><br/> <u>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u><br/> <u>령으로 정한다.</u></p> |

## 가. 협회 설립의 필요성과 요건

소재·부품·장비 등 기반산업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있어 공급망 안정의 기반이 되는 한편 대외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기반산업의 생태계 구축은 기반산업 자체의 발전뿐 아니라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이에 정부는 2025년 10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년)”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년)”을 의결하여 시장선점형·시장전환형·규제대응형·공급망확보형 등 4대 도전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기존 10개 특화단지에 추가하여 10개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임.

지난 20년간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액은 연평균 6.0% 이상 증가하여<sup>1)</sup> 수출액의 경우 2015년 26억 4,600만 달러에 2024년 36억 1,600만 달러로 10년간 36.7%가 증가하였으나,

수입액 역시 2015년 15억 9,600만 달러에서 2024년 24억 9,100만 달러로 10년간 56.1%가 증가하여<sup>2)</sup> 수출과 수입이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1)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 2023.5.

2) e-나라지표, 「소재부품장비 동향조사」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전체 부품산업 수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7%, 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무역수지 흑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30.5%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한편,

반도체 검사 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27억 달러로 전체 장비산업 무역수지 적자 84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장비 분야에서의 해외 의존도가 큰 상황임.

개정안은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협회 활동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정책 수립 시 업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협회설립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협회 설립요건으로 “반도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사업”을 규정한 부분은 제한에 따른 특별한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나. 협회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개정안 제18조의2제4항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협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상당수가 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소재·부품·장비 협회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산업통상부는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국가재정 여건 및 예산 등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심의 시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sup>3)</sup>, 「자율운항

---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2.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관련 정보 전파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홍보·교육·실태조사
4.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발간
- 4의2. 국가핵심기술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업무
6.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협회의 정관이 정한 사업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⑤ 정부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sup>4)</sup>,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sup>5)</sup> 등 유사 입법례에서 소관 협회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회 등의 설립) ① 자율운항선박 관련 사업자는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운항선박 관련사업자의 공동이익 및 국제경쟁력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 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으로 하여금 이 장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7조(협회의 설립)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다. 협회 관련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 규정

개정안 제18조의2제3항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구개발 지원 등 협회의 업무를 열거하고, 제8호에서 협회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6)</sup>.

소재·부품·장비 협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모두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법률로 규정한 업무 외에 추가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협회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협회의 보충적 업무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해당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sup>7)</sup>, 「엔지니어링산업 진

---

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의2(소재·부품·장비 협회)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정부 재정·위탁 사업의 수행 및 지원
2.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4.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분석
5.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제안
6.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 조사·연구
7.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동반성장협력 등을 위한 업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홍법」<sup>8)</sup> 등 유사 입법례에서 소관 협회의 업무 중 기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 등이 아니라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 제18조의2제6항은 소재·부품·장비 협회의 설립·조직·운영·업무·재정 및 행정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음<sup>9)</sup>.

소재·부품·장비 협회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설립·조직·운영 등 협회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등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관련 정보 전파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홍보·교육·실태조사
  4.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발간
  - 4의2. 국가핵심기술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지원 업무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업무
  6.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협회의 정관이 정한 사업
- 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지원
  5.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의2(소재·부품·장비 협회) ⑥ 협회의 설립·조직·운영·업무·재정 및 행정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협회의 자율성을 과다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야 할 사항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열거하기보다는 필수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위임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경우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sup>10)</sup>,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sup>11)</sup>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으며,

「계량에 관한 법률」의 경우 “협회의 설립,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는 등<sup>12)</sup> 많은 입법례에서 필수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10)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7조(협회의 설립) ④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한국계량측정협회) ④ 협회의 설립,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1> 협회 관련 대통령령 위임규정

| 법률(안)                  | 규정내용                                     |
|------------------------|------------------------------------------|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계량에 관한 법률              | 협회의 설립,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
| 동 개정안                  | 협회의 설립·조직·운영·업무·재정 및 행정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당연직 위원 위촉

(안 제8조제3항)

개정안 제8조제3항은 소재·부품·장비 협회의 장을 대통령 소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게 함.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 ①·② (생략)                                                                        |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③ -----<br>-----<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회의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2. -----<br>-----제5항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회의의 장과 제18조의2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협회의 장<br>-----<br>----- |
| ④ ~ ⑦ (생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경쟁력 혁신과 관련된 제도와 관련 기업간 협력모델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수급안정 및 실증·성능검증 및 생산지원에 관하여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sup>13)</sup>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당연직 10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하고 있으며<sup>14)</sup>, 현재 총 24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1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3.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
4. 새로운 소재·부품·장비의 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사업의 실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의 개발 및 공급대책
5.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경쟁력 혁신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변경
6. 소재·부품·장비분야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업무의 조정
7.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8.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실증·성능검증·생산 지원
9.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예산·자금·인력·입지 등 규제·제도개선의 부처 간 조율 및 종합 전략 수립
10.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관리
11. 소재·부품·장비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간의 조율
- 11의2.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규제개선 등의 검토
- 11의3.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에 관한 기본방향
12.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② 경쟁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중 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표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

| 구분           | 위원                                                                                                                       |
|--------------|--------------------------------------------------------------------------------------------------------------------------|
| 당연직<br>(10인) |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br>(부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br>(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비서관 |
| 위촉직<br>(14인) | (위원) 경제단체장 5인, 연구기관 4인, 산업계 2인, 학계 3인                                                                                    |

개정안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협회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분야별로 근거법률에 따라 다수의 협회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협회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협회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임.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 또는 관련 입법례 중 특정 협회의 장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는 입법례를 찾기 힘들 점,

소재·부품·장비 협회의 장은 산업계 소속으로서 그 학식과 경험에 따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법안 심의시 정부조직법(법률 제20289호) 시행(2025.10.1.)에 따라 개정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460 |